



# 불법자동차단속안내문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집중단속(연중수시)을 실시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아래 위반내용을 참고하시어 불법자동차 근절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관련법규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범칙금 또는 과태료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토·일요일을 제외한 연중 실시(분기별 1회 집중단속 실시)

\* 단속장소 : 서구 관내 전지역

\* 단속대상차량 :

## 1. 무단방치 자동차

|      |  |
|------|--|
| 위반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li> <li>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li> <li>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li> <li>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li> </ul> |
| 처분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

## 2.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      |  |
|------|--|
| 위반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등화장치 설치 (방향지시등 청색전구, LED등화, 안개등, 네온사인등, 형광등, 써치라이트 등)</li> <li>철재 범퍼가드 설치</li> <li>철재 스포일러 설치</li> <li>엔진본넷 후드업</li> <li>경음기 추가 부착 등</li> </ul> |
| 처분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만원 이하의 과태료</li> </ul>  |

## 3.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      |   |
|------|---|
| 위반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드핸들 설치 및 핸들직경 임의변경</li> <li>적재함 격벽 및 보호봉 제거</li> <li>소음기 임의 제거 또는 변경</li> <li>HID(방전식전구)전조등 임의설치</li> <li>타이어 외부돌출</li> <li>승차장치 임의개조 (좌석 탈거, 추가설치)</li> <li>견인고리 임의설치</li> </ul> |
| 처분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li> </ul>   |

## 4. 등록번호판 위반 자동차

|      |   |
|------|---|
| 위반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인탈락 및 등록번호판 훼손</li> <li>등록번호판 식별 불가(고의 가림)</li> </ul> |
| 처분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고의)</li> </ul>           |

## \* 불법자동차 대표유형



철재범퍼 설치



봉인탈락



HID·방향등 청색



타이어 돌출

\* 신고센터 무단방치차량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Tel. 560-4962 / Fax. 560-4879)  
불법자동차 :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Tel. 560-4872 / Fax. 560-4869)